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3. 1. 개정 2013. 7. 1.
개정 2013. 11. 15. 개정 2014. 3. 1.
개정 2015. 8. 31. 개정 2016. 3. 1.
개정 2016. 7. 28. 개정 2017.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교학 및 학생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유학생’ (이하 '유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본 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2. ‘외국인 교환학생’ (이하 '교환학생' 이라 한다)이라 함은 본교와 외국대학교간의 교류협정이나 학생교환 협정에 의하여 교환되어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3. ‘한국어 연수학생’ 이라 함은 글로벌어학교육센터장의 입학허가를 받아 글로벌어학센터에서 한국어 연수를 목적으로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 2 장 학사관리

제3조(외국인 교환학생) 외국인 교환학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한국어 연수학생) 글로벌어학센터 규정 및 글로벌어학센터 학사운영세칙에 의한다.

제5조(교육과정편성) 유학생의 소속 학부(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업무분장) 유학생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입학전형 : 국제교류처, 입학홍보처 <개정 2013.7.1., 2015.8.31.>
2. 등록금 징수 : 총무처
3. 장학금 지급 : 교학처 <개정 2013.7.1., 2014.3.1.>
4. 학적관리 : 교학처 <개정 2013.7.1., 2014.3.1.>
5. 학사지도 : 소속 학부(과) 및 국제교류처
6. 기숙사 생활 및 배정 : 글로벌빌리지 및 국제교류처 <개정 2015.8.31.>

제7조(입학자격) ① 외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2급 이상을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6.3.1.>

② 기타 입학자격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제협력관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 업무 처리요령”의 기준을 준수한다.

제8조(선발고사) ① 삭제 <2016.3.1.>

② 삭제 <2016.3.1.>

③ 입학홍보처의 신입생 입학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 <신설 2016.3.1.>

제9조(유학생유치·관리위원회) 유학생 유치·관리 위원회는 유학생 유치·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10조(교육과정) 유학생은 본교 학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① 수강신청 <신설 2015.8.31.>

1. 유학생의 첫 학기 수강신청은 국제교류처에서 지도하고, 다음 학기부터 유학생 본인이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기간에 지정된 방법으로 신청한다.

2. 총장은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수준에 따라 수강신청 학점수를 제한하거나 한국어강좌를 의무 수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학사지도 <신설 2015.8.31.>

1. 유학생의 학사지도는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 등에 의한다.

2. 국제교류처와 학과는 학기 개시 직전·후 신입 유학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학사제도 및 학교생활 등을 안내한다.

3. 유학생 지도교수는 신입 유학생과 및 학생 멘토를 대상으로 학기당 2회 이상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제교류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국제교류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지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유학생 지도교수 <신설 2015.8.31.>

1. 유학생 소속 학과 또는 학부(이하 “학과”라 한다)에 유학생의 학사 및 생활지도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유학생 지도교수를 둔다.

2. 유학생 지도교수는 당해 학과(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지명한다.

3. 교수업적평가 시 유학생 지도교수 활동을 봉사실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학생멘토 <신설 2015.8.31.>

1. 국제교류처장은 유학생의 초기 유학생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멘토(튜터 또는 버디)를 선발하여 운영한다.

2. 학생 멘토의 선발과 운영, 혜택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한국어 수업) 유학생은 개인별 한국어 능력에 따라 한국어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본교의 글로벌어학센터에서 한국어 집중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제12조(등록학점 및 성적처리 기준) ① 정규학기는 학기제 등록을 적용한다. 단, 본교 글로벌어학센터에서 한국어 교육만 수강할 경우에는 글로벌어학센터의 내부 학기 규정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학점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전학의 적용범위) 타 대학으로 전학은 허가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 유학 파견한 현지 기관 및 대학과 관련학과의 동의를 얻어 관련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 하에 전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선수학점 인정) ① 글로벌어학센터에서 연수중인 ‘한국어 연수학생’ 중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소지자에 한하여 총장 또는 교무지원처장의 승인 하에 본교 정규과정을 6학점 까지 선수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한국어 연수생’ 이 선수학점을 이수한 후 본교 입학하고, 기 이수한 선수학점이 전공학(부)과의 교과과정에 부합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타 학과에 입학 시 선수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된다.

제 3 장 장학금

제15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 및 재학하는 외국인유학생(이하 “유학생” 이라 한다)에 대한 학비 일괄 감면을 지양하고 공정성과 효율성 근거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6조(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입생 장학금

1. 신입생의 입학금은 면제토록 한다.

2. 한국어능력(이하 “TOPIK” 이라 한다) 2급 이상 소지자는 수업료의 50% ~ 100%까지 차등 감면처리 한다. <개정 2013.11.15., 2016.3.1., 2016.7.28.>

가. TOPIK 2급 이상 : 50% <개정 2016.7.28.>

나. TOPIK 4급 이상 : 70% <개정 2016.7.28.>

다. TOPIK 5급 이상 : 100% <개정 2016.7.28.>

라. 삭제 <2016.7.28.>

3. 당해 본교 정규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 입학인원의 3%까지 특별장학(100% 감면)을 지급하고 그 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신설 2016.07.28.>

② 재학생 장학금

1.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수강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장학금을 지급 한다. <개정 2013.11.15.>

2. 재학생의 성적장학금은 30%~100%까지 차등 감면처리 한다. <개정 2016.3.1., 2016.7.28.>

가. 평점 2.5 이상 ~ 3.0 미만 : 30% <개정 2016.7.28., 개정 2017.9.1.>

나. 평점 3.0 이상 ~ 4.0 미만 : 50% <개정 2016.7.28., 개정 2017.9.1.>

다. 평점 4.0 이상 ~ 4.3 미만 : 70% <개정 2016.7.28., 개정 2017.9.1.>

라. 평점 4.3 이상 ~ 4.5 미만 : 100% <개정 2016.7.28., 개정 2017.9.1.>

③ 어학 우수자 특별 장학금

1. 재학 중 당해학기 취득한 TOPIK 자격 급수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3.1.>

가. TOPIK 4급: 100,000원

나. TOPIK 5급: 200,000원

다. TOPIK 6급: 300,000원

2. 당해 학기 서로 다른 TOPIK 자격 급수로 장학금을 재신청할 시에는 차액만 지급토록 한다.

④ 기타장학금 <신설 2013.11.15.>

1. 기숙사비 지원

가. 외국인 유학생(신입생 및 재학생) 전원에게 매학기 4인실 기준 기숙사비 지원

나. 외국인 유학생(신입생 및 재학생)이 기숙사 입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숙사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2. 삭제 <2016.3.1.>

3. 근로장학금 지급

가.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의 요구에 근거하여 일정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할 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나. 근로 장학금 선발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부서 담당자의 추천으로 부서장이 정한다.

⑤ 위의 항목에 없는 장학금의 지급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제17조(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1. 당해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2. 학과별 수업연한 학기 이수 완료 후 초과 등록한 자

3. 학칙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을 받고 처분당시의 학기를 포함 두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8조(이중수혜제한) ①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이 당해학기에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 1인 2개 이상의 수혜대상이 되었을 경우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단, 근로 장학금 및 어학 우수자 특별 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인정한다.

제19조(장학금 지급중지, 취소, 반환) ①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취소하며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1. 장학금수혜를 받은 학기 수업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래 2호의 사유가 발생 시에는 해당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60일 이후 사유 발생 시는 장학금의 반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2. 지급중지·취소·반환의 사유

가.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나. 휴학하는 경우(단, 질병에 의한 사유는 제외)

다. 제적된 경우(자퇴 포함)

라.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나 학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장학금의 포기, 해당업무의 태만 및 해임되었을 경우

제20조(기타) 상기 규정에 없는 장학금은 본교 장학 규정을 따른다.

제 4 장 유학생 상담 및 지원

제21조(기숙사 생활) ① 유학생과 교환학생 및 한국어 연수학생은 기숙사 숙소를 우선 배정한다.

② 유학생과 교환학생 및 한국어 연수학생은 기숙사 거주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속 학과(장)과 국제교류처장의 승인 하에 외부 거주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8.31>

③ 생활수칙에 대하여는 기숙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입국 관리) ① 국제교류처는 유학생과 교환학생 및 한국어 연수학생의 출입국 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15.8.31.>

② 출입국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출입국 관리시스템 접속권한을 부여 받도록 한다.

③ 출입국 관리 담당자는 유학생과 교환학생 및 한국어 연수학생의 학적 변동 및 학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 학과에서는 유학생이 10일 이상 무단결석 시 그 사실을 국제교류처로 통보하여야 하며, 국제교류처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1.>

제23조(학생상담) 유학생 상담 교원은 유학생과 교환학생 및 한국어 연수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별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활용해야 한다.

제24조(취업 및 진로지도) 유학생 상담 교원과 출입국관리 담당자는 유학생과 교환학생 및 한국어 연수 학생의 취업과 진로지도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홈페이지 공지, 이메일 발송, SNS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단, 불법 아르바이트 등에 대한 법적 규제를 지도하고 체류 자격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4조의2 유학생과 교환학생 및 한국어 연수생의 시간제 취업의 근로시간과 임금은 법적기준에 의거하도록 지도한다.

[본조신설 2015.8.31.]

제25조(보험가입) ① 유학생과 교환학생 및 한국어 연수학생은 매년 본교에 재학기간 동안 건강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학생과 교환학생 및 한국어연수 학생은 고지된 보험금을 납부함으로써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 수강신청 학점 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필요한 경우 유학생의 등록금고지서에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고지할 수 있다.

제26조(위기관리) 유학생과 교환학생 및 한국어 연수학생의 사적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속 해당 기관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하되,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학교가 정한 학생 상벌 에 관한 시행세칙에 준거하여 적용한다.

제27조(유학생의 권익 및 준수사항)

- ① 유학생 및 한국어 연수생은 우리대학의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진다.
- ② 유학생은 우리대학에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2.유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 3.재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4.출입국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및 출입국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본조신설 2015.8.31.]

[중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5.8.31.>]

제2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15.8.31.>]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개정) 제6조(업무분장) 1호, 5호, 6호, 제21조(기숙사생활) ②항, 제22조(출입국 관리) ①항, ④항의 국제교류실의 명칭은 ‘국제교류처’, 입학처 명칭은 ‘입학홍보처’, 국제교류실장 명칭은 ‘국제교류처장’ 으로 개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